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방부 소관
 - 병무청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6)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9)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9)
3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1)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35.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1)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4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5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6)
5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53.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5)

5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5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8)
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1)
6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6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6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6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70.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9)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7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6)
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8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6)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8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39)
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7)
8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8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0)
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9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9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9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6)
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4)
9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0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01.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5)
10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9)
1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1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10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1)
1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7)
10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2)
1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09.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1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1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1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
114. 반현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유찬욱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77)
115.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박연호 외 50,06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1)
116.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

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4.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10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10
6.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6)	10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10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9)	10
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10
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10
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10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1)	1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0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0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10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10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0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10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10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10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10
2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10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10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10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10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10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10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10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9)	10
3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1)	11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11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11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1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1
35.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11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11
3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11
3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11
3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11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11
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1)	11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11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11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11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11
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11
4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11
4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11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11
5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6)	11
5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11
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11
53.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2209595)	11
5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11
5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11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8)	11
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11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11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11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11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1)	11
6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12
6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12
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12
6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12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12
6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12
6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12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12
70.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9)	12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12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12
7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12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12
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12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12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12
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12
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12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12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6)	12
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12
8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6)	12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12
8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39)	12
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7)	12
8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12
8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0)	12
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12
9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2
9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12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12
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3
9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13
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6)	13
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13
9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13
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4)	13
9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3
10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3
101.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5)	13
10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9)	13
1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13
1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13
10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1)	13
1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7)	13
10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2)	13
1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3

109.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13
1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13
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13
1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13
1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13
114. 반현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유찬욱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77)	13
115.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박연호 외 50,06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1)	13
116.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13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챕터의 건,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각 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위원님들과 논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동 안건은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소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챕터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챕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 등 기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수록한 자세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챕터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챕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4.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6.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6)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9)

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1)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2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9)

3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1)
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3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35.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1)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8)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3)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1)
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4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5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6)
5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53.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95)
5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55.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42)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8)
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1)

6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6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6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6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70.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9)
7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7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7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8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6)
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8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6)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8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9)
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7)
8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8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0)
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9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9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9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6)
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4)
9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0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01.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5)
10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9)
1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1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10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1)
1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7)
10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2)
1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09.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1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1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1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114.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유찬욱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7)
115.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박연호 외 50,06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1)
116.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14시07분)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 국방부 등 4개 기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제4항부터 116항까지 113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과 오늘 오전 양일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장선영 위원, 부승찬 위원, 임종득 위원, 황명선 위원, 황희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6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한 전용 등을 통해 205억 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0억 원을 이용하여 국방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을 한 군 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해서 대규모 이·전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33건의 장비가 군요구사항 미충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정비장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시장 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9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20건,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이 다소 낮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해서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해서 센터 이용률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지원실적 저조 및 예산 초과집행 사항이 문제된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실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수요에 적정한 예산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송제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금액이 최근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현실에서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과 한국형구축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공정하게 조속히 추진되어 전력화가 자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8건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강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토론은 법률안 등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2월 26일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8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유용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방산 업체들의 방산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기술 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 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재정 또는 민간자금 출자 등을 활용한 정부의 체계적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방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K-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K-방산이 방산 수출 4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타국의 침보·정찰 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되 국방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2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의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계획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간 미군에 대한 전체 공여 면적의 46%에 달하는 2867만m²의 땅을 미군에 제공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할 근거로서 사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아직 1단계 조차 마무리되지 못했고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평택시 지역개발사업 다수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평택지원특별법은 현재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완수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연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흥기원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법이 일몰이 끝나면 다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홍기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루틴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홍기원 의원 예, 평택지원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들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일몰로 종료되면 일반 공여구역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5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백선희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이 주도하여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을 이끌고 위헌적·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문민통제 원칙이 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현행법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군의 문민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 수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방개혁의 취지가 훼손되고 문민기반 조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차관·차관보,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후 3년, 국방부 실장급에는 2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민기반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방 운영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안규백 장관 임명을 통해서 군 문민기반 조성의 틀이 마련되었지만 국방부 내 주요 직위자들의 문민화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 국방개혁법에 명시된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수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소관 법안 81건과 청원 3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은 생략하고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77항, 이강일 의원, 위성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장성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전략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군 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적 신뢰 및 군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 지위 및 후속 인사 등 장성급 인사 운영상의 현실적 고려사항을 감안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에서 10쪽까지는 생략하고 자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휴전 감시, 치안 유지 등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해외파견과 같이 국군의 다국적 군·국방교류협력 파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절차와 국회 동의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해외파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외통위 소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파견과 그 취지와 내용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이와 비교·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덕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덕교 전문위원입니다.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실상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정된 인원이 복무 기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 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무기화 현상, 국방반도체의 높은 해외 의존도, 가격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국방반도체를 활용한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구조와 높은 보안성 요구로 시장 자생적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산에 관련된 내용과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결산 및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일단 오전에 제가 예산소위에서 국방 험프리스라고 말씀드린 거는, 캠프 험프리스가 아니고 캠프 이글이었다는 정정 발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지난 7월 4일 25-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국방부 소관 분야인 방사청 예산 877억 6000만 원이 국방위에 보

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감액됐습니다. 이는 염연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방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절차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서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 편성 절차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사청은 기재부 요청에 따라서 이미 7월 1일 이전에 어떤 사업을 감액할 거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회예결위 심사에 대비해서 심사 대응 자료까지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방사청은 7월 2일 이전에 국방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방 위원들 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보고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엄격하게 경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방사청이 감액을 뭘 했느냐? 7개 사업을 들여다보면 모두 편성 당시에 이미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당해 연도 시험 평가 방법과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기한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로 3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결국 지난해 예산편성 시에 이미 사업 추진 준비가 안 된 사업을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마음대로 감액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에 대한 권한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사업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방사청차장님!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위원장 성일종 지금 강선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재발 방지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강선영 위원님한테 가셔서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질문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5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아 보니까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24년 거는 아니지만 미래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엊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GDP의 3.5%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확인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증액할 계획임을 기본 방향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77조단가요, 정부 국방비 예산이?

(「66조」 하는 위원 있음)

66조에서 다시 또 추가로 이걸 증액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내년도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군은 실제 AI라든가 새로운 AI 강국, R&D 이런 데 새로 도약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아마 단계별로 5년 동안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주로 R&D라든가 AI 이런 걸로 통해서 AI 강국, 스마트 강국으로 이어지는 데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만약에 국방비가 증액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증강하고 또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력을 보다 첨단화,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특히 무인화 무인전투기 이런 분야를 획기적으로 좀 향상시켜서 바로바로 민간에 이양을 하게 되면 민간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그때도 보니까 주한미군 소유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나는 그 땅의 소유권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와 좀 혼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주한미군 기지는 사용권을 미측에게 부여한 공여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현재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장관급이나 이런 데 논의된 바는 없지요, 요구된 바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추가 논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건 잘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했다면 잘 이해를 시키도록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정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상당히 우려되는 뉴스가 있었어요. 내란특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이버 간부 A 씨 진술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사이버사령부가 실제 불법적인 내란을 위한 준비에 동원됐다. 특히 작년 8월 UFS 훈련 때도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했고 사이버정찰TF를 계엄 직전에 운영해서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증언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저희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해서 인원을 편성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로 군이 엄청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요동을 쳤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6월에는 심리전 조직도 폐지를 했고 사이버전이 중요한데도 사이버사령부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놀아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사 결과에 따라서 타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강릉에 가뭄 피해가 엄청나게 심한 거 알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재난에 대한 선포도 하고 국가 총력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살수차라든가 제독차라든가. 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오늘은 군 급수 차량 70여 대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내일은 330여 대를 더해서 약 400여 대를 투입해서 급수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잘했어요. 군도 총력전에 동참해서 강릉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장관님께 국방비 인상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세부 내용.....

○**임종득 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국방비 인상과 관련돼서 즉답을 안 하셨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방금 차관님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차관님은 일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여 드릴게요.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거 보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기사 봤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를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다음에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2030년까지 사기로 했다. 이거 협의된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는 거기까지, 저는 거기까지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종득 위원** 장관도 모르고 차관도 모르면 누가 아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하는 걸.....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이게 오보예요? 이게 오보냐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임종득 위원**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차관이 알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임종득 위원**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퍼센티지도 안 나왔어요? 이거 지어낸

겁니까? 창작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수치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한미 간에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하는데 국방부장관도 모르고 있고 차관도 지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안보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고요, 지금.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보도가 오보입니까? 오보면은 대응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방부가 알고 있는 한미 간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협상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국민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비는 단계적으로 우리 국방력의 증가가 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액을 시켜 나갈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미국의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3개월 전부터 한 것하고 언론보도되는 내용하고 지금 장관과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비는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그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 단계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액수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미국산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3.5%에 포함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두 번째 무기 구매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발 부탁드리는 데요, 이것 아주 민감한 이슈들이고 미국이 주장한, 요구한 내용을 놓고 봤거나 나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쉽게 피해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국방부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미국의 요구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어떻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관·차관은 지금 원론적인 이유로 빙글빙글 돌려 가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이게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항이 아닌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제발 좀 솔직해지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논의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그것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안 알려 주는 게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알려 줄 것을 알려 주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전반적인 경과하고 앞으로의 협상 전략을 최소

한 국방위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어제 장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동아일보에서는 세부적인 수치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언론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언론이 오보를 하면 대응을 하셔야지요. 대응하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대응을 안 해요, 오보를 해도?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잘 이해했고 잘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는 놓고 봅시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것 정리를 좀 잠깐 하면, 국방비를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무조건 올려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정부의 계획이 무기체계나 여러 가지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밑에 실무자들이 이러이러한 무기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연도별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추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한테 이런 추세의 방향 정도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직원들을 보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게 순서가 맞아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어떤 분야에서 국방의 필요한 무기체계를 가질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시면서 또 의견 들으셔서 하시면 국방부가 일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현안이 계속 생겨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난달 23일에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하사가 소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유용원 위원** 오늘 아침에 또 육직부대 소속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진 것으로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두 건의 초급간부와 관련된 총기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23일에 발생한 사건은 6사단 예하 모 사단의 DMZ 내의 GOP가 아닌

GP에서 발생했고 당시 K1 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소총이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발생한 위치는 GP가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유용원 위원** 오늘 대구에서 발견된, 숨진 채 발견된 모 대위는 3사관학교에서 생도를 지도하는 훈육장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총기는 K2 소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군용 소총입니다.

○**유용원 위원** 이 두 사건 모두 민간경찰하고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지요. 그런데 차관님, 이 3사관학교 생도를 교육하는 훈육장교가 평상시에 이런 실탄을 소지할 수 있는 보직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유용원 위원** 그런 점에서 총기 및 실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유용원 위원** 이 간부들을 양성하는 훈육장교가 K2 소총하고 실탄을 소지한 채 또 영천도 아니고 대구까지 이동한 상태로, 별다른 제재 없이 이동한 상태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고요.

지난번 모 사단 GP 총기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 GP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장 엄격한 총기 관리가 요구되는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한 분은 하사고 한 분은 대위, 그러니까 임관 10년 차 미만의 초급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우선 총기 관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사라든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필요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열흘 사이에 발생한 이 초급간부의 잇단 총기 사고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 계신 여당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야당 위원들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초급간부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입수해서 공개했던 자료입니다만, 상반기 국군의 부사관·위관장교 희망 전역자 수가 총 2460명으로 2021년 대비해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하고 위관장교의 정신건강 진료 현황도 2021년부터 작년까지를 비교하면 3년 전에 비해서 4985명에서 작년에는 6497명으로 거의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따른 사고가 아니고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방부 차

원에서 초급간부들의 생활 실태라든지 근무환경, 정신건강 관리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국방부에서는 이미 TF를 구성해서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정신건강 부분 등 좀 범위를 넓혀서 그 부분을 잘 식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한기호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이 계시고 정청래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당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좀 바쁘십니다. 두 위원님께서 좀 뒤로 양보를 해 주시고요,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병무청장님, 국가재정법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냥 잘 몰라도 대략 짐작은 가실 거예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목적에 맞게 쓰는 것……

○**정청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명한 재정 운용, 건전한 재정 그리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은.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5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을 했다면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규정을 해 놨는데 46조 3항 1에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위반이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이 조항을 적용해 본다면 병무청 지하상황실을 무리해서 갑작스럽게 조성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인정하십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인정합니다.

○**정청래 위원** 인정하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인정하시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정청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저런 기관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안부는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비상 지하상황실 시설을 점검했는지 모른다. 비상시설에 대한 점검 권한도 국정원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도 외우기가 어려워서 적은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대전 병무청 청사에는 이미 지상 9층에 상황실 겸 회의실로 쓰이던 55평 규모의 중회의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2층 지하에 추가로 51평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구축한 사실이 있지요?

○**병무청장 흥소영** 예.

○**정청래 위원** 그런데 이 지하에는 뭐가 있었느냐? 국가기록원 창고가 있었어요. 이거 타 기관이지요. 그러면 타 기관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보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기록원 창고에 있었던 시설은 어디로 갔느냐? 2동 6층에 병무청 정보보호팀 정책연구실이 있었던 곳으로 이전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지요. 병무청 정보보호팀과 정책연구실은 2동 7층으로 또 이전시키고, 원래 2동 7층에 있던 병무민원상담소는 대전 청사 내의 민원동으로 이전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있던 시설들이 막 이곳저곳으로 다 옮겨 갔어요,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또 예산 전용까지 해가면서 타 기관을 이전시키면서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있었던 것은 다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하 비상대피시설용이었는지 진짜 비상상황실용이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청장님 답변은 이러저러한,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본인이 청장으로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차관님, 병무청장에게 제가 이것을 조사시키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간 안에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고, 타 기관 국가기록원까지 이전시키면서 또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 상황을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중사가 저한테 보낸 내용을 제가 한 대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수돗물과 관련된 거라 여러모로 꺼림칙하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 신경 쓰이네요. 평균 한두 달에 필터 교체하는 시기인데 과장 보탬 없이 최근 들어 샤워 두세 번만 하면 필터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오염이 돼서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필터 한 개에 삼사천 원 정도 하는지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천 지역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군부대가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수나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수도로 쓰고 있어요. 샤워하는데도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필터를 써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양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화천군이 상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과 국방부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도 돈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화천군수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서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작전성 검토한 중에 87개 중에 14개만이 적합하다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오늘 언론보도 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해군 작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신안 하우리항 앞에 송이도하고 안마도인데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남쪽, 지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앞이더라고요. 여기가 주로 남북한의 잠수함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안 됐는지. 두 번째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해역이지요—지금이라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지, 먼저 ‘이 지역은 해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세 번째는 불가 지역으로 판단한 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건을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한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죽 질문드리고서 나중에 답변……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군인가족협의체가 만들어진 곳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모여서 강원도 군인가족협의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영관장교부터 부사관들까지 가족들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선 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서 지난번에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 가족에 대한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협의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아파트 건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화천군·양구군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100% 지원해 줍니다. 거기다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지원해 줘요. 그런데 남편이 전출을 가야 돼. 그러면 군인 아파트에 못 살아. 그런데 민간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민간인 아파트가 없어, 집도 없어. 그래서 집을 짓어 달라. 지금 전방지역에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공실인 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파트를 짓어서 분양을 해 주면, 현역들이 들어가 살게 해 달라 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작년에는 군인가족의 날을 국방부가 자체 내에서 시행을 해서 군인가족 행사를 했는데 남편이 없는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게 금요일 날이에요. 왜 문제가 있나?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지자체든 부대든 하는 곳이 있다면 남편을 좀 내보내 줘라,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영관장교 부인이 하는 얘기……

저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GP와 GOP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GP는 200시간으로 올려 주고 GOP는 150시간으로 올려 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소령입니다. 지금 GOP 대대의 작전장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 하는 것이 GOP 근무하는 대위—대위 중에서 고참 대위—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50시간, 시간외수당까지 계산하면 맥시멈 727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소령은 얼마 받느냐?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아빠도 GOP 대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근하고 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온다는 거예요. 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위한테는 약 700만 원이 나오고 자기 아빠한테는 500만 원 나온대요, 똑같이 그렇게 근무하는데. 그러면 그곳에 근무하는 영관장교에게는 그만한 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심각하게 한번 봐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실을 좀 하고 싶은데 각 지역별로 이런 군인가족들의 협의회를 만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놀이시설을 지자체는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해 주나? 군에서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전방지역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곳은 군인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 망가져도 아무도, 양쪽에서 안 해 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지자체하고 협조하든 국방부가 하든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묶어 가지고 다 했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번에 답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언론보도가 아니라 그전부터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연동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작전성 검토나 이런 협의가 없이 진행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보협의처럼 조금 방법이 다르긴 한데 군과 작전성에 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알려 주면 마찰을 줄이고 또 사업을 더 잘 되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 분야로 추진해 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가족 관련해서 아파트, 전역 후나 전출 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설문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가족의 날 행사 시에 배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GP·GOP 시간외수당에 따라서 대위보다 소령 봉급이, 급여가 더 적은 문제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안 정부 요구안에 국방부에서 GOP 소령 추가수당을 신설 요청했는데 기재부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국회 논의 단계에

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군인가족협의체 사무실이나 놀이시설 관련한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의 목이나 시설관리 규정에 맞으면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고 여의치가 않으면 지자체와 각 지역 사단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수돗물 얘기 안 하셨어.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돗물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고 그쪽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단독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행안부와 환경부 또 해당 지자체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양구는 과거에 국방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 부분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시장 할 때, 논산 항공학교 교장 하셨던 강선영 위원님이 교장으로 계실 때 제가 거기 어린이 놀이터 시설 죽 했습니다. 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국방비가 몇 % 정도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2.3% 정도입니다.

○황명선 위원 2.42% 정도 되지요. 앞서 임종득 위원님께서 언론 보고 한 3.5%까지 증액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봤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지금 NATO 같은 경우는 GDP 몇 % 정도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1%대입니다.

○황명선 위원 NATO는 GDP 한 5% 정도 됩니다, 2035년도까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향후에 그렇게……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결국은 국방비가 증액이 돼야 되지요. 특히 남북 간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는 이런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 군은 북한 핵, 고도화된 핵이나 그리고 장사정포, 비대칭 전력체계를 갖고 있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전력의 현대화가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방비 증액과 관련돼서 첨단무기 전력체계 그다음에 전력의 현대화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미국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도 각국에서 구매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팔지 않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의를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잘해 내야 된다,

이게 우리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전력 현대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한테 이 국방비 증액이 마치 그냥 미국에 덤으로 주는 이런 입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국방비 증액이 지금 남북관계에서 전력체계의 현대화 이런 여건들을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잘못하면, 답변 못 하시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님도 하셨고 백선희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는데, 특히 12·3 내란 이후에 군인들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없었지요. 특히 12·3 내란에, 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지휘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위법·부당한 이런 지시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나,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3 내란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 아니면 불용 이렇게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지휘관들부터 포함해서 많은 장병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가한테,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법을 제정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요.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국방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 군인연금법과 관련돼서 내란세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안의 목적에 위반된다 해서 추미애 의원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내셨어요. 이 내용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이것은 단순한 연금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군인연금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과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정을 유린한 내란 가담 세력이 성실복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없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2월 3일 이후 12월 4일 날 퇴직신고서를 냈고 5일 날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 1월 달부터 545만 원씩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연금법, 내란세력의 군인연금 지급은 법안의 목적에 어긋난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안을 할 테니까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책임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비 증액 관련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부분, 특히 3축 체계 전력이라든지 AI 무인체계를 비롯한 첨단, 우리 국방을 첨단화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전력을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 등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국방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인식을 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문제 인식을 잘하고 있고 그 법 개정 진행 간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 법안 관련해서는 진행이 되면 저희도 그 논의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좀 전에 정청래 위원님께서 병무청 지하상황실 개설한 부분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법제처에서 과거에 유권해석 한 내용을 보면 병무청과 방사청은 국방부 자체……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데 굳이 얘기하셔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따가 따로……

○국방부차관 이두희 속기록에라도 남겨 놓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의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거나 병무청에서 자체감사해야 되는 게 현재의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드리고 정청래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두 번째 제기하신 것이잖아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그 사무실을 이렇게 한 것은 그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해 오신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흥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유용원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군의 오폭 사고, 영공 이용 이런 것 전부 다 미숙지를 해 가지고, 조금만 사전에 다 확인하고 이랬더라면 그런 큰 사고로 안 이어졌을 것인데 그런 사고가 있더니 지난 6월에는 신병이 총기를 렌터카에 넣어 놨다가 그것 빨리 회수도 못 하고 3일 만에 주민의 신고로 총기를 되찾은 어떤 모 사단 신병교육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 6월에 최전방에서 하사의 어떤 총기 사고, 오늘 아침 대구 수성못 모 부대 대위의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겠지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아무리 국방부에서 예방책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뭘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 조치라든지 어떤 예방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것은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물어보면 또 예방책을 세워서 특별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련의 어떤 군 기강 해이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국민과 또 국회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단순한 어떤 단일의 사건·사고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군 기강이 이완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견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도 있고 각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도 있지만 새로운 장관님이 오셨고 또 군 수뇌부가 전체 개편되는 이런 계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기강을 다잡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문민 장관이 들어섰는데 이렇게 계속 잊을 만하면 사고가 빈번하게 터진다면 장관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차제에 정말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정신 강화 훈련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한다 하더라도, 이것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했으면 싶고, 지금 수사 중이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 제외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발견된 총기가 본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부대 소속의 어떤 총기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직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제가 점심 먹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현역 간부여 가지고 소총 반출을 다소 쉽게 했다. 물론 일단 훈련병이나 사병보다는 간부들이 총기 소지하는 데는 조금 유리한 쪽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총기라든지 탄약 유출 이런 경위도 차관 보고 못 받았지요, 아직까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척이 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총기 관리 이 부분은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이런 군 내의 사망 사건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왜냐하면 총기를 가지고 군 부대 내도 아니고 지금 한 25km 정도 이 거리를 갖다 이동했다. 그것도 사람들이 빈번하게 제일 많이 모이는 유원지 근방이다. 이것은 우예 마음만 잘못 먹어서 총탄을 좀 많이 소지해서 왔더라면, 다른 마음 먹어 버리면 일반인,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무수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다시는 이런 상황 자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최근에 4성 장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장관께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합니다. 평상시에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군정권은 각 군 총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군에서 현역 4성 장군 정도 될 때면 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약간 염려하는 바입니다.

통상 우리가 문민 정부, 장관이 문민 출신이어도 상관없다, 미국의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은 군 전역하고 7년 이상 되면 문민으로 치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은 소령 출신 헤그세스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관이. 그래서 미국은 NSC에 군령권을 행사할 때 합참의장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는 합참의장이 NSC 상임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필요시에 참석합니다.

○**강선영 위원** 필요시에는 참석하지요. 그런데 제가 안보실 구성도 보면 안보실장님의 당연히 대사 출신이시고 외교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1차장인 김현종 차장 3성 장군이고, 그다음에 2차장·3차장이 모두 대사 출신이에요.

우리 NSC 목표는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 예방과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상태인 나라다. 그래서 4성 장군 중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위기 시에 국방부장관의 군령권을 보좌하는 1순위의 지휘관이 합참의장인데 사실 합참의장, 제가 공군 진영승 장군을 폄하하려는 뜻은 없지만 그분이 공군이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전력을 보면 전대장

마치고 그다음에 한 것은 다 전력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공군의 전력차장, 합참의 전력처장, 그다음에 공군의 기참부장, 그다음에 합참의 전력발전부장 이런 것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한 경력이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합참의 목표는 용병과 양병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양병에 치중되어 있는 전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관님도 군령권을 행사하거나 군 경험에 없어요.

우리 작계상에, 이미 알겠지만 과거의 작계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징후를 최대한 72시간 봤지만 지금은 매우 짧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원회가, 안보회의가 구축돼서, NSC가 구성돼서 빨리 작전에 대한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장관님이 참석하셨을 때 ‘이번 을지연습 때 3일차 H-HOUR 선포될 때 뭐 하셨습니까?’라고 질문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3일차에 탱고병커 격려 방문하셨습니다.

H-HOUR 선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장관이 해야 할 일 무척 많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계신 참모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잘못을 하셨다기보다는. H-HOUR 가 선포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그리고 군 내에, 그다음에 북한군한테 우리가 적성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전쟁을 개시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합참의장도…… 그러한 전체적인 작전에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급한 육군 세 명의 4성 장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작전 직능에 있는 사람은 2작사령관밖에 없어요. 2작사령관 작전 직능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작전 직능에, 소위 말하는 합참 작전 부서나 작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에 근무한 적 없습니다. 기갑 작전인 지작사령관, 기갑입니다, 기갑.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차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차관님도 포병이셨고 작전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야의 안보관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작전제대, 전술제대로 가면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정황이 진급을 그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 직능, 우리가 그날 밤 싸워야 되는 전쟁 준비 이런 부분을 혹시 군에 있는 우리 후배들이, 소위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메이저라는 내과, 외과 회피하고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안과 가듯이 과거에 특정한 기수는 육사 1등 한 사람이 재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육사 49기? 그러한 것처럼 작전 직능이 약해져서는 우리 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한기호 위원님 보병 530, 임종득 위원님 보병……

530 아니신가요?

○**부승찬 위원** 저는 공군이에요. 왜 그래요?

○**강선영 위원** 여기 군인 아니시잖아요.

○**부승찬 위원** 훌륭한 사람이 갔어.

○**강선영 위원**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내가 버릇처럼……

○**부승찬 위원** 뭐 530만 중요해? 뭐예요, 이것?

○**강선영 위원** 아니, 내가 버릇처럼 그 일을 하던 사람, 내가 그 일을……

○**부승찬 위원** 아니, 중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아니요, 내가 그 일을 자고 났는데 벌떡 일어났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주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530 얘기만……

○**강선영 위원** 저는 그 일을 늘 밥 먹듯이 하던 사람과 그 일을 조금 뒤떨어져서 사고하면서 하던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계급 높은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 다 진급 안 시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라는 우리 젊은 장교들이 힘들고 어려운 작전 직능, 지통실, 전투 병과를 회피해서 쉽고 편하고 안정된 길만 가는 군인을 만들려면 사관학교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있는 작전 직능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이 싸우는 전투력을 버리면, 사자가 싸울 능력이 없으면 개는 그냥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 받아먹고 사는 것이지요. 야성을 키우는 게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절대 지금의 진급의 시그널이 예하에, 야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주신 조언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저는 530이 아닙니다. 공군입니다.

약간 합참의장이나 우리 군을, 조금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 같아요. 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지금 병력 감소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괜찮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이 안 올 정도의 큰 고민입니다.

○**부승찬 위원** 위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아까 유용원 위원님께서 PPT 자료 띄운 것 보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지금 되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처우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생활 여건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군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2016년 군복무 중에 걸린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순직한 홍 일병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순직 3형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7년을 싸워서 순직 2형으로 변경됐습니다, 7년 만에.

그리고 2023년 12월 부대 내 집단 따돌림, 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했는데 원대로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도병원에서 식물인간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수도병원에서 심의 결과

더 이상 치료 조치로는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전역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결정서. 그런데 누가 군대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단편적인 건이에요.

그냥 소모품 취급해요. 그냥 전투력 유지하니까 숫자만 맞추면 돼,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엄의 도구로 활용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군대는 내 갈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역지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매력적이어야 군대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 계속될 겁니다. 이제 사람에, 군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보니까 이번 25년도 편성안에 직장으로서의 군, 매력적인 군, 이것 관련된 예산이 제로예요. 여전히 하드파워에 집중돼서 급유기가 삭감됐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운용할 사람도 없는데. 이게 맞아요? 제가 늘 하듯이, 감기 걸렸는데 소화제 주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순직 장병들 있잖아요. 언제 순직 3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차관님? 모르시지요? 2011년까지는 순직은 그냥 다 처리했어요. 어차피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것은 순직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데 순직 3형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다 순직 3형으로 몰아요. 그래서 2011년까지 매년 177명이 순직 판정을 받아 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순직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매년 21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다 3형으로 몰아. 그러면 현법이랑 병역법을 개정해야지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왜 군대에 남아 있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비 사다 놔 봐야 세워 둔다. 이 명품 장비를 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순직 3형 없애는 법을 제가 발의합니다. 11년까지 잘 운영됐는데 그다음부터, 12년부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전부 3형이에요, 순직 3형. 얼마나 된다고요, 매년 얼마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결정문이 있어요. 2023년 9월 14일 날 ‘순직 유형을 구분하는 제도를 정비하라’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람에 투자 안 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합니까? 소모품 취급하면서 국가안보를, 전투력을 유지하겠다고 합니까?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것 하나 질의할게요.

장선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번 대장 인사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어요? 장관의 제청권은 보장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공감능력이 떨어져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한 자, 그다음에 비리 연루 의혹이 있어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자, 내란·계엄과 관련된 연루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가 있어요. 이번 승진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물론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보세요, 이게 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가 명확히 주장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성락 의원과 누구지요? 여기 법안 검토 요약에 보면 4성 장군 이상의 청문회, 그런데 미국이 4성 장군 40명이 다 청문회를 한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총장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한기호 위원님 엄청 반대하시는데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 현재 개정 과정에서 국방부도 적극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투자, 예산 편성안에 없던 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2026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부승찬 위원** 이번 정부에서 본봉 30% 정도 인상시켜요. KF-21 1대 안 사면 그것 다 해결 돼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기호 위원** 여당이 왜 그래요?

○**부승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백선희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또 임종득 위원님 계시지요?

더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을 먼저 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차관님, 저는 오늘 군의관하고 공보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국방부에서 의대생 현역병 유출과 군의관 입대 감소 대책이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숫자를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

해 보면 작년 24년 4월에는 65명이었는데 25년도 4월 기준으로 보면 589명이에요. 굉장히 큰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이 의료대란의 영향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는 멈출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우 개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무기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국회에서 공보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의료취약지구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은 사실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관은 36개월인데 지금 공보의는 37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무사관학교가 필요하다, 사실은 군의 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군의관 제도의 기한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처우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한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의무사관학교이든 아니면 의대이든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 내지는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관 임대 감소 대책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군 내의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종합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합대책이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없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과 더불어서 언제쯤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와 아직 실무적인, 구체적인 선까지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료 인력과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군의관과 공공의료 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장교들 모집도 요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군 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장교 모집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병역 이행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편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무사관학교 관련해서는 이러한 공공의료 인력, 군 의료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 관련해서 의무사관학교가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보고 국방부도 필요한 제도라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사회적 공감대, 의료계의 공감대, 국가적 공감대 등을 얻기 위한 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군 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일선에 나가면 군의관들이 부족해서 훈련이나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응급구조사라든지 또 지역 단위 거점병원을 마련한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들을 진화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희 위원** 조금만 더 부연설명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군의관·공보의 문제를 36개월에서, 37개월에서 단축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여러 장교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안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면 지금 군인들이 현역병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36개월에서 18개월, 이 면리트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의관을 36개월을 만약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 그러면 현역병으로는 계속 유출되는데, 그러면 문제 해결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획기적인 정책, 매우 혁신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우리나라의 군의료 체계하고 그리고 의료 취약지구의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방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KDDX 사업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번에 예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용되고 이렇게 했던데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임종득 위원**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8월 12일 날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아까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의 어떤 진부화 여부를 기술자문을 했는데 기술자문 결과 진부화는 아니고 최신 기술이 설계에 반영돼 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아마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장관후보 당시에 KDDX 사업 지연과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사업자 선정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고, SBS Biz에서는 경쟁입찰을 언급을 하셨어요.

혹시 장관님의 지금 입장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까?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아니요, 장관님은 특별하게 장관님 되신 이후에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장.

방사청 개청 이후에 함정 획득 사업에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경쟁입찰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아니,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왜 경쟁입찰을 안 시켰지요?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에 대한 뼈대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세설계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어서 상세설계를 해 왔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지금 문제점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함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KDDX 관련해서 최종 사업 정책결정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다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사업부서에서 안건을 보고 드리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K-방산이 불을 타고 있고 마스가(MASGA) 해 가지고 한미 간에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방사청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체 간의 조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원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함정 사업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소요도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국방부가 진중문고로 선정했던 책을 돌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폐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6·25 전쟁 이야기’?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발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 수거 폐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내용 중에 일부……

○**임종득 위원**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 평가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종득 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 지금 다시 수거해 가지고 폐기해야 될 책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승인을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실무부서에서 했다고 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사실입니까? 여기 지금 발언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실무부서에서 먼저 한 거다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책국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고 제가 그 검토 결과 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폐기된다는 소문이 나자 국민적으로 관심이 폭발을 해요. 한번 보세요. ‘폐기한다고 해서 재빨리 샀습니다, 별 다섯 개’, ‘이 책은 회수 전에 확보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다음 한번 넘겨 보세요.

이게 지금 2024년도, 25년도에 이 책을 가지고 독후감 공모전까지 하고 또 그 독후감 중에서상을 주고 이렇게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제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가 하면 이 문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 이수과목 축소를 시도했었고 육군사관학교에 6·25 전쟁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돼 있던 것을 선택과목으로 했었어요. 기억나지요?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군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국방부가 알아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을 회수해 가지고 폐기한다?

이거 이해됩니까, 차관으로서? 이해돼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사업국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진중문고를 선정할 때도 외부 심사위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위축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냥 하고 싶다면 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폐기할 때 따로 절차는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진중문고로 선정하는 부분과 폐기는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절차 없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밑에서 누가 건의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혹…… 국민의 예산 들여 가지고 몇억 투자했던 것을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그냥 폐기한다? 그것을 지금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들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폐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작가 측에서 국방부장관을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요?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한기호 위원 잠깐만,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장관님한테 제가 직접 물었었는데, 여기서 물었나? 이미 작가 측에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억 2000만 원으로 저걸 알고 있어요, 납품가격이. 그런데 저렇게 폐기함으로써 작가로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폐기하는 걸 내가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말 자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무선에서, 정책실에서 그냥 폐기하겠다 하고서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출렬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폐기 절차도 채택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적용해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국방부차관 이두희 관련해서 잠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선정 절차만 있고 폐기 절차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향후에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차관님, 계룡대 3군 본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국방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3군 본부가 있으니.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여기 보니까 신도안면은 군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군 가족만 살고 계

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계룡시 인구가 한 4만 5000 정도 되는데 군 가족, 군인, 3군 본부 군 가족 그리고 퇴직한 예비역 군인분들, 군 가족분들, 제가 볼 때는 한 60% 이상 된다라고 봐져요.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신도안면은 다 군인분들이에요. 군 가족분들이에요. 전국에서 신도안면은 면에 사시는 주민들은 다 군 가족이에요.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그래서 여기 안에 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쇼핑센터와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복지단의 목적은 장병들의 복리 증진, 사기 진작, 군 생활의 질적 향상, 군인과 군 가족들의 생활 안정 보장 뭐 이런 등등등등 이유로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공익적 목적으로.

그런데 쇼핑센터는 운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군 복지센터는 지금 스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여기 뒤에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헬스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했지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인건비나 운영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임대 사업을, 미용실이나 학생들 무슨 스터디 카페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어요. 국군복지단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남녀 사우나, 헬스장, 필요하면 요가 이런 형태로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본적으로 복지시설 운영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이 세부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살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해서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몇 가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해상풍력을 할 때, 해상풍력을 지금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장 성일종** 국가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앞섭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이 앞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원 할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반드시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보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군 작전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항이 안보라고요. 그래서 군의 작전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권역에서

우선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관님께서 잘 좀챙기셔 가지고, 특히 서해 쪽인데 또 서해 쪽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한 작전으로부터 모든 권역을 보호하고 나머지는 도와드리세요. 그러나 군의 작전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공군·해군·육군까지 다 해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까 또 말씀 주실 때 GP 수당, GP나 이런 데 위험지역에 가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령이 더 급여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한 지역에 가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게 맞아요. 소령 자체가 지금 급여 체계가 낮고 잘못돼 있는 거지요. 이걸 비교하시지 마세요. 잘못되어 있는 소령의 급여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위험한 작전지역하고 비교하면 그것 또한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급여도 그렇잖아요. 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 수당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적게 책정돼 있는 소령급의 급여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서 이것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사청장님, 전에 ADD 관계자들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해 가지고 노르웨이가 가지고 제가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위성과 관련돼 가지고 MOU를 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위원장 성일종** 이게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구매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뚫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사청에서 MOU가 나오지를 않다가 보니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방산이 진출하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MOU는 그렇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면서 방산협력에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지 공관의 이야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었고 올해 또 한 여기 인근에 갔었기 때문에 우리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우리 기업들이 더 좋, 뒤에 관계관 오셨지요? 이거를 좀 서둘러 봐 주세요. 아셨지요?

그다음에 방사청 강 차장님, 나토가 지금 방산물자를 사고 있는데 한 국가가 사면 인접 국가들이든 나토 연합국이든 다 한 품목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산물자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맺어서 구매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나토하고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우리 방산기업도 진출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고민을 방사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예,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차관님, MCS 장약을 지금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 여러 부서들 간의 협조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MCS?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어떤 사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왜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 못하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국방부 관련자, 관계자들에서부터 외교부, 국정원, 안보실 이분들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최종 목적지가 우크라이나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팔 수 있는 게 십여 년간에 걸쳐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NSC에다가 공동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것 빨리 푸세요.

북한은요 그 나라에 병력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신기술에서부터 별 걸 다 주고 있어요. 러시아 눈치 보다가 이것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놨어요. 러시아 항의가 들어오면 그러면 너희는 우리한테 뭐 해 줄래 하고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의 틀이 늘어나는 건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정부가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나는 거예요.

국가도 장사하는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다 뮤여져 있는. 뒤에서 백업을 해 줘야 되는 큰 단위예요. 국가 단위예요. 이것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못 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풀어놓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어디에서 문제가 오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면 너희는 우리한테 뭘 해 줄래?’, 북한한테 신기술 주는 것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의 활동하는 것까지 지금, 방사청은 풀려 그러는 것 같 은데 외교부 여러 관계기관들이 있잖아요. 먼저 MTCR도 다 풀었습니다. 그게 국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 차관님 직접 나서서 가지고 이 부분도 진행 상황을 좀 알려 주시고 이것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파악하셨어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회의 후에 방사청하고 같이 가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자체 없이 처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세심히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소영 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지막으로 강환석 차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 강환석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소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에 따라 사업 관리와 예산집행에 있어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소위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심사하는 등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매서운 지적을 통해 정부 측의 예산집행 실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6항까지 110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법안소위 직접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86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희

○첨가 위원(1인)

김민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재원 흥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관리관 김경욱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윤봉희

인사기획관 이인구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 홍창식

감사관 성기욱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국방혁신기획관 최장식

국제정책관 이광석

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 김신애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염은성

군사보좌관직무대리 김선봉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박진칠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직무대리 강환석
 기반전력사업본부장직무대리 박정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현
 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직무대리 장봉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2025. 8. 27.

○ 의안 회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25. 8.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9)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025. 8.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70)

이상 2건 8월 29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20. 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8)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소위원회 직접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3월 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3월 10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3월 1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4월 1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0)

5월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1)

7월 30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71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8. 26.

○보고서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8. 28. 헌법재판소장 제출)